

- 아.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한 물품의 원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
- 자.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끝.

## 공정거래위원회



수신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,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,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, 대한건설협회 회장,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, 한국조선협회 회장,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

행정사무관 이형삼 하도급개선과 전결 09/02  
과장 조근익

협조자

시행 하도급개선과-520 (2009. 09. 02.) 접수  
우 137-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서울조달빌딩 806호 공정거래위원회 / <http://www.ftc.go.kr>  
전화 02-2023-4508 전승 02-2023-4505 / [gudtka1475@korea.kr](mailto:gudtka1475@korea.kr) / 대국민공개